

의안번호	
의 퇴 인	변재일의원
회 답 일	2023.12.20.
추계번호	23D4968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5호(정의)	‘소음피해 보상’ 정의규정에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함	의무규정
2	안 제14조제1항(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등)	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근무기간을 추가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5호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제1항(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등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, 보상금 지급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보상금은 소음영향도,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,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□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현행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현황은 각각 48개소와 1,134개소임

- (군용비행장) 전술항공 15개소, 지원항공 11개소, 헬기전용 22개소 등 48개소임
- (군사격장) 대형화기 130개소, 소형화기 1,004개소 등 1,134개소임
- 참고로, 2023년 국방부 ‘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사업’¹⁾ 예산은 1,391억 4,000만원임

□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기준은 비행장의 경우 대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, 사격장의 경우 대형화기와 소형화기로 구분되며, 소음대책지역별로 제1종 ~ 제3종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

-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은 감액비율 30%,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은 감액비율 50%를 적용하는 등 보상금을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감액·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음

[표 1]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기준

구 분		소음대책지역		
		제1종	제2종	제3종
비행장 (단위: 웨클 ¹⁾)	대도시 (광주/수원/대구포항/부평/하남)	95이상	90이상 95미만	85이상 90미만
	그 외 지역			80이상 90미만
사격장 (단위: 데시벨 ²⁾)	대형화기(구경 20mm 이상)	94이상	90이상 94미만	84이상 90미만
	소형화기(구경 20mm 미만)	82이상	77이상 82미만	69이상 77미만
보상금(매년 1회 지급, 1인당)		월 6만 원	월 4.5만 원	월 3만 원

주 1) 웨클(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)은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에서 채택한 소음영향도로서,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, 야간, 심야 등 시간대별로 운항 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 정도를 반영한 소음평가 단위임

2) 데시벨(decibel)은 소음의 피해를 받는 쪽의 감각을 감아한 소음단위로서, 동 기준에서는 db(A)와 db(C)로 구분되며 A 가중치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음정도를 보정한 값이고, C 가중치는 실제 마이크에 측정되는 음압을 나타냄

자료: 국방부

1) 시설정책지원(2533-320)의 내역사업

-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어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
 - 국방부에 따르면, 소음대책지역 내 상시근로자 현황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」 제7조²⁾의 현황조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임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최형수	오명희

2) 제7조(현황조사) 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이용현황 조사(지목별 면적 포함)
2. 인구현황 조사(가옥수, 세대수, 인구수)
3. 도시·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조사
4.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형수	02-6788-4667	jjaps@na.go.kr